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】

의안 번호	531
----------	-----

2024. 10. 21.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10. 10. / 정현미 의원 등 11명
나. 회부일자 : 2024. 10. 10.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10. 21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남양주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이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3조)
- 토론회 등의 신청·승인 및 지원·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4조~제5조)

- 토론회 등의 진행 및 결과의 반영을 규정(안 제6조~제7조)
-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및 실비보상을 규정(안 제8조~제9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윤선기)

-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에 담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나,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 ‘토론회 등’의 종류 및 규모 등 적용 범위에 대해 세부적인 시행규칙 또는 내부 운영방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